

동명생활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명생활관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 동명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 입관일”이란 생활관에서 정한 입관일을 말한다. 다만, 생활관에서 정한 입관일이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정한 입관일의 마지막 날을 지정 입관일로 한다.
2. “지정 퇴관일”이란 생활관에서 정한 퇴관일을 말한다. 다만, 생활관에서 정한 퇴관일이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정한 퇴관일의 첫째 날을 지정 퇴관일로 한다.
3. “입관포기”란 지정 입관일 전일까지 입관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4. “중도퇴관”이란 지정 입관일로부터 지정 퇴관일 전일 사이에 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강제퇴관”이란 규정 제16조의 사유로 동명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함)의 직권에 의해 퇴관하는 것을 말한다.
6. “확정 퇴관일”이란 중도퇴관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제3조(관생 선발) ① 1학기 관생의 정시모집 시 다음 각호의 모집단위별로 선발인원을 배정한다.

1.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 한국어 연수생, 재외국민 등 포함)
 2. 당해 연도 수시전형 입학생
 3. 당해 연도 정시전형 입학생
 4. 당해 연도 편입학생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 학부 재학생(당해 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2학기 정시모집 시에도 선발인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는 1학기 정시모집 외에는 선발인원을 별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선발한다.
- ③ 군사학과 1학년 학생은 1학기 관생의 정시모집 시 우선 선발하며, 학군사관후보생(ROTC후보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1, 2학기 관생의 정시모집 시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2.06.09.)
- ④ 별도의 장애인실을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실의 여석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관장이 정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 외의 우선 선발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정한다.
- ⑥ 1차 모집결과 선발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될 때에는 모집단위별 배정인원을 조정 또는 통합하여 추가 선발할 수 있다.
- ⑦ 정시모집 후 선발인원 미달, 입관포기 및 중도퇴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모집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모집단위별 1차 선발인원 및 선발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외 선발인원 및 선발 기준은 관장이 정한다.

제4조(제출서류) 생활관 입관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관 서약서 1부
2. 결핵 검진 결과지 1부
3. 기타 필요서류 각 1부

제5조(호실 변경) 관생은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 시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생활관비 및 시설 대여료)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 및 식비로 구성되며 관리비 및 식비는 [별표1]과 같으며, 식비는 급식업체에서 생활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호관의 경우 전기 또는 가스 사용량이 과도한 호실의 관생에 대해서는 추가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설 대여료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생활관비 납부) 생활관비는 납부 기한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입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생활관비 환불) ① 입관포기한 관생에게는 관생이 납부한 생활관비 전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② 중도퇴관 및 강제퇴관한 관생에 대한 관리비의 환불은 [별표1]에 의한다.
(개정 2022.03.17.)

③ <삭제> (2022.03.17.)

제9조(생활관비 감면) 협약 또는 대학에서의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03.15.)

제10조(출입 시간 및 식사 시간) 생활관 출입 시간 및 식사 시간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외박) ①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박 당일 24시 전까지 외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3호관 관생의 경우에는 외박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09.01.)

② 삭제 (2023.03.15.)

③ 삭제 (2022.09.01.)

④ 삭제 (2022.09.01.)

제12조(외부인 방문 및 초대) ① 외부인이 생활관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내로 초대하거나, 숙박을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게시물) 게시물은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 없이 철거한다.

제14조(시설물 관리) ① 퇴관 시에는 사용한 호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반납 물품을 행정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인 호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도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공동시설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독점을 금한다.

④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지체없이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사 및 집회) 생활관 내에서 행사와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1주 전까지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 행위) 생활관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3호관 관생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따로 정한다.

1. 음주, 가무, 도박, 폭행, 소란, 낙서, 지정 장소 외 흡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2. 커피포트, 전기방식, 전기장판, 전기담요, 토스트기, 쿠키, 다리미, 밥솥 등의 전열기구 반입 및 사용
3. 휴대용 가스레인지, 버너, 양초, 휴대용 가스, 유류, 식칼, 과도 등의 인화물질 및 위험물 품 반입 및 사용
4.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5. 시설물의 파손, 무단이동 및 구조변경
6.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의 반입 및 사육
7. 기타 생활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위험한 행위

제17조(점검) 관장 및 행정실 직원은 사전 통보없이 호실을 방문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8조(변상) 관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상점 및 벌점) ① 선행을 한 관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하고 생활관의 질서 등을 해한 관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한다.

② 상점 및 벌점 기준은 관장이 정한다.

③ 1개 재판학기 벌점 누계가 8점 이상인 관생에 대해서는 차기 모집 시부터는 입관을 불허한다.

④ 1개 재판학기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관생에 대해서는 강제퇴관 조치하고, 차기 모집 시부터는 입관을 불허한다.

⑤ 상점과 별점은 상쇄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동명생활관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 (생활관비 및 시설 대여료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 제9조, 제11조, 제27조 및 제28조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적용하고, 이 지침 제6조, 제8조 및 제19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관비 및 시설 대여료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별표1]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활관비 및 시설 대여료

1. 관리비(개정 2022.01.13., 2022.03.17., 2022.09.01.)

생활관	명칭	인실	실수	관리비			비 고
				재학생	교직원	외부인	
1호관	게스트룸	1인실	7실	9,800	12,000	40,000	-교직원 및 외부인에 게는 침구류 세탁비 10,000원을 별도로 부과함 -외부인의 경우 부가 세 별도임
	일반실	2인실	8실	6,000	7,400	25,000	
	일반실	3인실	236실	5,400	6,600	22,000	
2호관	일반실	1인실	1실	6,900	8,500	28,000	
	일반실	2인실	1실	6,000	7,400	25,000	
	일반실	3인실	72실	5,400	6,600	22,000	
3호관	일반실	2인실	18실	7,100	8,700	28,000	
		3인실	21실	6,100	7,400	24,000	

- 가. 관리비는 숙박일 수를 기준으로 하되, 지정 입관일부터 기산하여 부과한다.
- 나. 지정 입관일 당일부터는 실제 입관 여부와 관계없이 퇴관 시(확정 퇴관일 기준) “다”의 중도 퇴관 및 강제퇴관에 따른 관리비 환불 기준을 적용한다.
- 다. 중도퇴관 및 강제퇴관에 따른 관리비 환불금은 다른 관리비 환불금은 확정 퇴관일 당일을 포함한 잔여 숙박일 수만큼 계산한다. 다만, 잔여 숙박일 수 계산 시 지정 퇴관일까지의 마지막 9숙박일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라. 지정 퇴관일 후에도 기말고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관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 퇴관일로부터 2일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식비(개정 2022.09.01.)

구 분	1일 2식	1일 1식(조식)	1일 1식(석식)
주말식 포함	3,200	3,700	3,700
주말식 제외	3,400	4,000	4,000

3. 급식 운영

- 가. 1, 2호관 입관생의 식비는 관리비와 통합으로 고지하고 수납한다. 다만, 10일 이하의 단기 재관이나 단체 입관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식비 고지 금액의 계산은 식사유형별로 지정 입관일 석식부터 지정 퇴관일 조식까지로 한다.
- 다. 수납한 식비는 급식업체로 입금한다.
- 라. 식사유형 변경에 따른 식비 변경과 입관포기, 중도퇴관, 강제퇴관 등에 따른 식비 환불과 관련해서는 급식업체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 마. 관장은 급식업체와 급식 운영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시설 대여료

생활관	명칭	규모	실수	시설 대여료			비 고
				재학생	교직원	외부인	
1호관	다목적홀	84석	1실	무료		180,000	- 1일 4시간 기준임 - 외부인의 경우 부가세 별도임
	식당	198석	1실	급식업체와 별도 협의			